



Created by Ben Davis
from Neun Project

임대인이 유틸리티를 차단했어요!

-
- ❖ 워싱턴주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는 2021년 6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연방 및 주 보호 조치 중 일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변경 사항은 [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에서 확인하십시오
-

이 문서를 읽어야 하나요?

예, 워싱턴 주 소재지를 임차 중인 임차인은 이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유틸리티를 차단하여 퇴거를 강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불법으로 임차인의 유틸리티를 차단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 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주법 [RCW 59.18.300](#) 에 따르면,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유틸리티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를 위해 임시로 차단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도, 온수, 난방, 전기, 가스가 포함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유틸리티를 차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을 고소(소액 반환 청구 소송)하여 유틸리티가 차단된 날로부터 일일 100 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반환 청구 소송이란?](#) 및 [소액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임대인이 불법으로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임차인이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틸리티 공급업체에서 해당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 이사를 나가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해당 주소지를 '방기(abandoned)'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틸리티를 차단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스위치를 다시 켜는 등의 조치로 유틸리티가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유틸리티 접근 권한을 독점할 경우 즉시 법률 지원을 받으십시오. 아래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법률 지원을 모색하는 동안 유틸리티 복구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청 문서 양식을 활용하십시오. 또한, 건축 법규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문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법 집행 담당자가 유틸리티를 복구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유틸리티 요금 보조가 필요할 경우, 2-1-1 으로 전화 또는 [웹사이트 \(https://search.wa211.org/\)](https://search.wa211.org/)를 방문하십시오.

법률 지원 받기

King 카운티 외부 거주자: CLEAR 핫라인(1-888-201-1014)으로 문의하십시오(주중 오전 9:15~오후 12:15).

King 카운티 거주자: 2-1-1 로 문의하여 법률 서비스 자문을 받으십시오(주중 오전 8:00~오후 6:00).

노인(만 60 세 이상)의 경우 CLEAR*Sr (1-888-387-7111, 주 전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난청인 또는 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중계 서비스를 통해 CLEAR 또는 211(또는 무료 전화 1-877-211-9274)로 전화하십시오.

[CLEAR*Online - nwjustice.org/get-legal-help](https://nwjustice.org/get-legal-help) 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CLEAR 및 211 에서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세입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 2021 Northwest Justice Project — 1-888-201-1014.

(복사 및 배포 허가는 Alliance for Equal Justice 및 비상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NOTICE REQUESTING RESTORATION OF UTILITIES

(유틸리티 복구 요청 통지서)

Date: _____

(날짜)

_____ [Landlord's name and address]

(임대인 성명 및 주소)

Dear _____:

(안녕하세요 _____님.)

This is to notify you that the rental at _____

_____ which you manage and which I live in needs these utilities restored:

(다음은 귀하의 관리 하에 있으며 제가 거주 중인 _____

_____ 주소지 임대물에서 복구가 필요한 유틸리티 목록입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The Washington Residential Landlord Tenant Act requires you to begin to do this within 24 hours to repair the loss of hot or cold water, heat or electricity, or a condition imminently hazardous to life.

(워싱턴의 주거용 임차인법(Residential Landlord Tenant Act)에 따르면 임대인은 수도, 온수, 난방, 전기 손실 또는 생활에 즉각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 및 조건의 수리를 24 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If the repairs are not completed within the applicable period of time, I intend to use the remedies provided in the Act.

(해당 기간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명시된 구제책을 활용할 것입니다.)

If you have turned off these utilities purposely to force me to move, this is also unlawful under RCW 59.18.300 and I may sue for damages for each day that the utilities were off.

(만약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고의로 이러한 유틸리티를 차단했을 경우, 이는 주법 RCW 59.18.300 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로서 저는 유틸리티 차단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복구일까지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incerely,

(감사합니다.)

Signature

(서명)

Print Name

(이름(정자체로 기입))